

샌디에고 카운티 공청회 정보

청문회 보고서 이용 가능성

1. 청문회 보고서는 계획개발서비스국(PDS)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으며 청문회 동안 회의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청문회 보고서는 다음 PDS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고서

http://www.sdcounty.ca.gov/pds/PC/sop/PCHearing_stream.html

조닝 관리자 보고서:

<http://www.sdcounty.ca.gov/pds/zanext.html>

2. 이해 관계자는 위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웹주소로 이동하여 이전 및 실시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시청 및/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 지침

1. 청문회에서 발언하기를 원하는 경우, 프로젝트 권고 사항에 대한 귀하의 입장에 따라 발언자 쪽지를 작성하십시오. 발언자 쪽지는 청문회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청문회 시작 10 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녹색- 지지

분홍색 - 반대

흰색 - 중립

2. 청문위원회를 상대로 발언할 때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귀하의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 a. 귀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귀하가 대표하는 조직을 명확하게 진술하십시오.
 - b. 관련 주제를 기반으로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십시오. 시간 제약이 있으므로, 발언은 간결하게 하십시오. 공청회와 관련된 문제만 논하고 사실에 대한 논점을 위원회 또는 조닝 관리자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결정과 직접 연결시키십시오.
3. 청문위원회를 상대로 발언할 때 다음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 a. 증언은 청문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청문회 시작 전에 결정된 대로 이 (2)분 또는 삼 (3)분으로 제한됩니다.
 - b. 공청회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우, 통합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그룹 대변인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시간 요청은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장과 협상해야 합니다.
 - c. 공청회가 종료되면, 공청회에서 제기된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외하고 신청인 또는 청중으로부터 더 이상의 증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일반 청문회 절차

1. 가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제에 인쇄된 항목 번호는 일반적으로 청문 순서를 나타냅니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닝 관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a. 직원이 프로젝트, 위치 및 직원 권고 사항에 대해 발표합니다.
 - b. 신청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두 번째로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c. 지역사회 계획 그룹/후원자 그룹 그리고/또는 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세 번째로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d. 청중 가운데 직원 권고 사항을 지지하는 사람이 네 번째로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e. 청중 가운데 직원 권고 사항을 반대하는 사람이 다섯 번째로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f. 신청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간단한 반박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g. 그런 다음 위원회/조닝 관리자가 해당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 제기

1. 이의 제기 양식, 이의 제기 수수료 정보 및 제출 요건은 5510 Overland Avenue, Suite 110, San Diego, CA 92123 에 위치한 계획개발서비스국 조닝 카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858) 565-5981 또는 (888) 267-8770 또는 다음 PDS 웹사이트: <http://www.sdcounty.ca.gov/pds/zoning/appeals.html>.
2. 다양한 허가 유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 PD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dcounty.ca.gov/pds/zoning/ZoningNumeric.html>. PDS 양식 157-163.을 참조하십시오.
3. 모든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대상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역일 기준으로 10 (십)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십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의 제기는 다음 업무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